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종자의 정의규정에 중간육성 개체 추가 등〉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12193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산종자의 정의규정에 중간육성 개체 추가	2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정비	7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로서 생산·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수산종자의 정의규정에 중간육성 개체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종자의 알, 치어, 치패 등의 생존·증식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제3호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수산동물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종을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이하 “중간육성”이라 한다)한 것

3. “수산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물종자산업”이란 수산물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종·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생략) 6. “수산물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물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물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물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7. ~ 9. (생략)	3. “수산물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수산물종자를 중간육성한 것 4. ----- ----- 생산(중간육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현행과 같음) 6. ----- ----- ----- ---- 생산·판매하는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행법 제2조에서는 수산종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수산종자는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하고, 수산동물종자는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산식물종자는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 최근 양식 어가에서는 어린 개체(알, 치어, 치패, 씨앗, 포자 등)의 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육성한 종자가 질병 내성·생존율이 높고, 양식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선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산종자의 정의에는 어린 개체(알, 치어, 치패, 씨앗, 포자 등)의 종자만 포함되어 있어 중간 육성한 개체까지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개정안은 종자를 중간육성한 것도 수산종자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종자업이 점차 분업화(수정란→치어→중간육성)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산종자별 형태]



- 수정란 : 정자를 받아 수정이 된 난자
- 치어·치패 : 알에서 깬 지 얼마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치어, 어류), 아직 덜 자란 어린조개(치패, 조개류·고둥류)
- 중간육성 : 치어·치패의 어린 개체 종자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크기 규정은 없음)

현행법에서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의에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¹⁾, “수산종자”의 정의에는 중간육성 개체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아 “수산종자산업”에도 중간육성 종자업의 형태가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중간육성의 형태도 동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중간육성의 정의를 생존·증식 등에 적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종자로서 육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는 수조의 크기, 사료의 형태, 사육수 관리 등 생산환경에 따라 그 크기 및 기간이 다양하므로 중간육성 형태의 기준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

2) (수조) 생산 수조의 크기는 다양하고, 같은 수조에서도 성장 크기가 달라 일정기간 지나면 크기별 선별을 실시(3m×3m, 5m×5m 등) → 크기 등 기준을 정할 경우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사료) 먹이생물(로티퍼·알테미아)-초기 배합사료(분말·알갱이사료)를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급이해야 하고, 먹이의 영양 등에 따라 종자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
(사육수) 품종별·성장 단계별 수온·용존산소 등에 따라 종자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정지 대상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와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제3호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
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
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 4. (생략)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신 설>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산물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 또는 거
짓으로 신고한 -----

5의2.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
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³⁾하고 있음.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⁴⁾하고 있음.

또한,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 제26조에서는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그런데, 현행법 제40조 벌칙 규정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지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표] 현행법 조문 정리

구분	제28조제1항 위반	제28조제6항 위반
제40조(벌칙)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u>거짓으로 신고한 자</u>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u>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u>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허가 취소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규정 없음

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현행법 제28조제1항의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것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인바 영업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고, 현행법 제40조 벌칙을 고려했을 때에도 법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현행법 제28조 제6항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금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안 제26조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둬으로써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⁶⁾

- 참고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28조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수산식물종자를 소지·유통·보관 또는 판매

6) 적용례 예시: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하여 제40조에 따라 벌칙을 받은 사례가 없으므로 소급 적용을
규정할 필요가 크지는 않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18